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54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변 론 종 결 2021. 1. 21.

판 결 선 고 2021.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5,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2021.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682,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3%(이자선 지급함, 매월 22일), 변제기 2019. 6. 22.(지연손해금 이율 연 5%)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로 위 2억 원에서 1회분 선이자 600만 원 및 근저당권설정 예상 비용 134만 원을 공제한 1억 9,266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근저당설정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실제로는 원고가 1억 9,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회분 이자를 납입할 당시 피고에게 실제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든 비용이 111만 9,700원이라고 말하면서 납입할 이자액에서 위 근저당권설정 비용 차액 22만 원(= 134만 원- 112만 원)을 공제한 578만 원(= 월 이자 600만 원 - 22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그 후에 원고는 수회에 걸쳐 이자를 납입하였는데, 1회분부터의 최종 이자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1	600만 원 선이자 공제	
2	2019. 2. 23.	578만 원
3	2019. 3. 22.	600만 원
4	2019. 4. 24.	600만 원
5	2019. 5. 22.	600만 원
6	2019. 6. 21.	600만 원

7	2019. 7. 23.	600만 원
8	2019. 8. 22.	5,450만 원
9	2019. 9. 23.	450만 원
10	2019. 10. 23.	450만 원
11	2019. 11. 22.	450만 원
12	2019. 12. 3.	1억 5,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9,400만 원을 이자 '연 3%', 지연손해금 이율 '연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는 54,682,103원을 피고에게 초과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사 월 3%, 월 5%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는 오기에 불과하고, 실제 약정은 이자 '월 3%', 지연손해금 이율 '월 5%'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반환액은 이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임의로 송금한 금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 423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후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판단

가. 이자율 약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최초 선이자를 6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래 수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월 6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2억 원에 대한 '월 3%'의 이자인 6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연 3%'의 이율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보다 12배나 많은 600만 원을 매월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1, 2회분 지급 시에는 선이자를 6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비용까지 계산하여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되었고, 당시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자를 '월 3%', 지연손해금을 '월 5%'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차용증에 '연'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타이핑 오류 또는 부동산자로 기재된 차용증 양식을 그대로 사용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변제충당

1)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제한이율은 연 24%이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이에 따라 원고의 지급금을 변제충당하면, 2019. 1. 22.자 선이자 600만 원은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 1억 9,400만 원에 대한 1개월 동안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3,954,410원(= 194,000,000원 × 0.24 × 31/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충당되고, 나머지 2,045,590원(= 600만 원 - 3,954,410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원고가 2019. 2. 22. 이후 변제하여야 할 대여 원금은 191,954,410원(= 1억 9,400만 원 - 2,045,590원)이 된다. 그 후의 지급액을 변제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변제일	변제액	원금(원)	적용 이율(%)	시작일	종료일	발생 이자	이자 충당	원금 충당	원금 잔액
1	2019.02.23	5,780,000	191,954,410	*24.00	2019.02.22	2019.02.23	252,433	252,433	5,527,567	186,426,843
2	2019.03.22	6,000,000	186,426,843	*24.00	2019.02.24	2019.03.22	3,309,714	3,309,714	2,690,286	183,736,557
3	2019.04.24	6,000,000	183,736,557	*24.00	2019.03.23	2019.04.24	3,975,938	3,975,938	2,024,062	181,712,495
4	2019.05.22	6,000,000	181,712,495	*24.00	2019.04.25	2019.05.22	3,336,360	3,336,360	2,663,640	179,048,855
5	2019.06.21	6,000,000	179,048,855	*24.00	2019.05.23	2019.06.21	3,522,272	3,522,272	2,477,728	176,571,127
6	2019.07.23	6,000,000	176,571,127	*24.00	2019.06.22	2019.07.23	3,705,099	3,705,099	2,294,901	174,276,226
7	2019.08.22	54,500,000	174,276,226	*24.00	2019.07.24	2019.08.22	3,428,384	3,428,384	51,071,616	123,204,610
8	2019.09.23	4,500,000	123,204,610	*24.00	2019.08.23	2019.09.23	2,585,277	2,585,277	1,914,723	121,289,887
9	2019.10.23	4,500,000	121,289,887	*24.00	2019.09.24	2019.10.23	2,386,030	2,386,030	2,113,970	119,175,917
10	2019.11.22	4,500,000	119,175,917	*24.00	2019.10.24	2019.11.22	2,344,444	2,344,444	2,155,556	117,020,361
11	2019.12.03	150,000,000	117,020,361	*24.00	2019.11.23	2019.12.03	844,081	844,081	117,020,361	0

따라서 원고는 32,135,558원(= 1억 5,000만 원 - 844,081원 - 117,020,361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32,135,5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